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2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박수현ㆍ이병진ㆍ임호선

이개호 · 임오경 · 안호영

조인철 • 전현희 • 박지혜

황명선 · 오세희 · 복기왕

이기헌 · 이광희 · 김남근

문금주 • 권향엽 • 김 윤

이연희 · 황정아 · 위성곤

허 영·채현일·양부남

김기표 • 이재강 • 김성환

의원(27인)

제안이유

현재 전국적인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은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 적이 있어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 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 마련 및 지원 시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재해예방과, 농·어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2.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3(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해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 2. 재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 3.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의4(특별농어업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 3조의3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제4 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 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 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대하여 생산비용과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기준은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제3조(재해대책)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4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u><후</u>	<u>o</u>]		
<u>단 신설></u>	경우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		
	원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u>야 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u>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u>		
	하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 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u>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u>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 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 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 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 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해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능력
- 3. <u>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u> 범위
- ③ 제1항에 따라 특별농어업재 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 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

<신 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건 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4(특별농어업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3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및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	전 및	지원) ① -	
	-1 .1	אור אור אור אור	-) II)
<u>대</u>	하여	생산비용고	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여	겨야 현	<u></u>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 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 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 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렁(이 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1354 年日) (7)
이 경우 농가와 어가
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기준은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생 략)

<u><신 설></u>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해를 입은 「농어업재해보험 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 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 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